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2나797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2나797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0405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변론 종결 2024. 6. 4.

판결 선고 2024. 8.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0405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1. 6. 29.에 체결된 24,238,21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3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는 2021. 6. 29.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F에 대한 판결금채권 24,238,21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주채무'라고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2012. 2.

14.이므로 주채무는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2017. 2. 14.에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원고가 2013년경 H를 상대로 주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지급명령은 H에게 효력이 없고, 그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2022년도에 이루어진 지급명령 역시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D에게 2020. 3. 19.부터 2020. 9.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392,200원을 D이 선임한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2021. 6. 29. F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권 24,238,210원을 D의 채무에 대해 변제받은 것이지 소외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F로부터 위 24,238,210원을 송금받을 당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원고, 소외 회사 등과의 채권채무관계나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는 피보전채권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1, 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H를 상대로 2013. 4. 10. 주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4. 25.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② 지급명령 정본은 2013. 5. 8. H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I 건물 6층'으로 송달되어 직원인 'J'가 송달받은 사실, ③ J는 2009. 11. 10.까지 H의 이사였던 사실, ④ 위 지급명령은 2013. 5. 23. 확정된 사실, ⑤ 원고는 2022. 3. 17. H를 상대로 주채무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 164169)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2. 5. 2. H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1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 H를 상대로 주채무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H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

이후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년경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존부

을 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변호사 계좌로 송금한 돈은 D 및 D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D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액 상당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D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산인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D이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그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D을 통해 F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판결금 채무액을 송금하게 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판결금 채무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을 9호증의 기재는 이해당사자인 D의 사실확인서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판결금 채무액 상당을 증여한 행위는 이미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이 피고의 감사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도 F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24,238,2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판사최성수